2001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

의안번호	제595호
의결년월일	2002. 5. 10 (제95회)

재출년월일 : 2002. 5. 10

재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

2. 내 용

○ 2001년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대표위원	부천시의회	시 의 원	강 진 석	○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○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
위 원	정길영회계사사무소	공인회계사	정 길 영	○ 95～2000. 결산검사위원 ○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
〃	이상현회계사사무소	〃	이 상 현	○ 공인회계사 합격(94. 9월) ○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
〃	김태원세무사사무소	세 무 사	김 태 원	○ 세무사 합격(2000. 10월) ○ 인천시립대 경제학과 졸업
〃	시장추천사		임 성 운	○ 전 공무원(문화체육과장) ○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

3. 참고사항

관 련 법 규

○ 지방자치법

제125조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99. 8. 31>

(이하생략)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46조(결산승인)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 <본조신설 99. 12. 31>

제46조의2(검사위원의 선임)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, 그 정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94. 7. 6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94. 7. 6, 99. 12. 31>

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○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
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.
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

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,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

(이하생략)

제6조(대표위원)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, 지방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.

(이하생략)